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855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병원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서삼석 의원안)	2

I. 개요

1. 서삼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85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병원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서삼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제106조의2제1항)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면제대상 및 적용기한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2026년 12월 31일까지 -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 설>	☐ 간접세 면제대상 석유류의 확대 ○ 면제대상 및 적용기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 2025년 12월 31일까지</u>

* 서삼석의원안 2024. 8. 14. 발의(의안번호 2855)

☐ 개정안은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등 간접세를 면제함으로써 어업인과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함)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민등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물의 생산기반 유지와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1년에 신설된 것으로, 당초에는 연근해어업용 선박 석유류의 부가가치세에만 적용하던 것을 1990년부터 농업용을 추가하였으며, 2003년부터 임업용을 추가하고 개별소비세, 교통세 등 다른 간접세까지 확대 시행하였음.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항은 적정운임을 유지하여 도서민을 포함한 여객선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운항원가의 상승 억제 등을 통해 연안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석유류세 면제규정이 신설되면서 1975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면제되는 세목이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확대되었음.

□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8,802억원이고,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지출 금액은 381억원으로 각각의 조세지출은 부가가치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감면 세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세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부가가치세	2,908	2,892	2,565	2,893	3,654	3,132	3,044	3,204
개별소비세	331	289	289	376	276	239	237	250
교통·에너지·환경세	7,196	7,547	7,997	7,421	5,019	4,692	4,357	4,547
교육세	1,129	1,175	1,243	1,169	794	739	689	723
소 계	11,564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327	8,724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세 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부가가치세	134	139	98	128	190	150	150	158
개별소비세	8	9	7	9	9	9	8	8
교통·에너지·환경세	329	350	309	308	224	192	188	196
교육세	51	54	47	48	35	30	29	31
소 계	522	552	462	492	458	381	375	393

주: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여 제외되었으며, 면제규모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임(「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병원선이란 병원이 없는 도서지역이나 외딴 해안지역 또는 해상에서 부상자 또는 해난(海難)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구호를 목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에 종사할 인원을 배치한 선박으로,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도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건조하였고,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 1대, 충남 1대, 경남 1대 및 전남 2대 등 총 5척의 병원선이 운영되고 있음.

[병원선 운영 현황(2024년 6월말 기준)]

(단위: 톤, km², 개)

시도	병원선	건조 연도		선박 규모	담당 지역			
		최초	대체		진료지역	면적	시군 수	도서 수
인천	531호	1976	1999	108	옹진군	17.2	1	9
충남	501호	1971	2023	320	대천항	6,451	6	32
경남	511호	1977	2003	162	통영항	55,801	7	41
전남	511호	1977	2023	390	여수항	51,929	5	77
	512호	1971	2003	170	목포항	104,635	6	90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도서지역이나 외딴 해안지역과 같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역에 대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병원선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가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병원선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주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관리하는 선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도서 산간지역의 자체적인 구조서비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제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둘째, 병원선에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할 경우 해당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나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문 의 처
02)6788-5160